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2024. 3. 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종의 섬유제품(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1. 개정 취지

-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아릴아민 시험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하고, 재사용 우모 및 수입연월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KS(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3.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기존에 고시('21.10.27)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간 병행 적용할 수 있다.

* 세부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신구조문대비표(일부 발췌)

현행	개정																																																																																																						
<p>가정용 섬유제품 (Textile products)</p> <p>1. 적용범위 (생략) 2. 인용표준 KS K 0021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KS K 0050 ~ 소방청고시 (생략) 3. 용어의 정의 3.1 ~ 3.8 (생략) <u><신 설></u></p> <p>3.9 (생략) 3.10 (생략) 3.11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외의류</td> <td>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울,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우의,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샌들, 아쿠아 슈즈 등을 말하며, 섬유 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사출 성형한 100% 합성수지제 신발1)과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2)은 제외), 벨트류, 멜빵 등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td> </tr> <tr> <td>중의류</td> <td>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헤어밴드, 가발, 귀마개 등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td> </tr> <tr> <td>내의류</td> <td>(생략)</td> </tr> <tr> <td>침구류</td> <td>(생략)</td> </tr> <tr> <td>기타제품류³⁾</td> <td>(생략)</td> </tr> </tbody> </table> <p>주 1.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을 따른다. 2.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을 따른다. 3.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p> <p>4. 안전요건 4.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발 중 사출 성형한 합성수지제품에 섬유소재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표 2]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착용 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합성수지 부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유해물질명</th> <th colspan="3">제품 구분</th> </tr> <tr> <th>내의류</th> <th>중의류</th> <th>외의류 및 침구류</th> </tr> </thead> <tbody> <tr> <td>폼알데하이드 (mg/kg)</td> <td>75 이하</td> <td>75 이하</td> <td>300 이하</td> </tr> <tr> <td>아릴아민 (mg/kg)¹⁾</td> <td colspan="3">각각 30 이하</td> </tr> <tr> <td>유기주석화합물 (mg/kg)²⁾ TBT(tributyltin)</td> <td colspan="3">1.0 이하</td> </tr> <tr> <td>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³⁾</td> <td colspan="3">0.1 이하</td> </tr> <tr> <td>방염제⁴⁾</td> <td colspan="3">사용하지 말 것</td> </tr> <tr> <td>알라지성 염료(mg/kg)⁵⁾</td> <td>각각 50 이하</td> <td>-</td> <td>-</td> </tr> <tr> <td>pH</td> <td>4.0 ~ 7.5</td> <td>4.0 ~ 7.5</td> <td>4.0 ~ 9.0</td> </tr> <tr> <td>니켈(Ni)의 용출량 (µg/cm²/week)⁶⁾</td> <td colspan="3">0.5 이하</td> </tr> </tbody> </table> <p>주 <신 설> 1. 염색한 섬유부분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K0147, KSK0739에 따른다. 2. ~8. (생략)</p>	구분	종류	외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 커버울,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 우의,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샌들, 아쿠아 슈즈 등을 말하며, 섬유 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사출 성형한 100% 합성수지제 신발1)과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2)은 제외), 벨트류, 멜빵 등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중의류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헤어밴드, 가발, 귀마개 등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내의류	(생략)	침구류	(생략)	기타제품류 ³⁾	(생략)	유해물질명	제품 구분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 ¹⁾	각각 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mg/kg) ²⁾ TBT(tributyltin)	1.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³⁾	0.1 이하			방염제 ⁴⁾	사용하지 말 것			알라지성 염료(mg/kg) ⁵⁾	각각 50 이하	-	-	pH	4.0 ~ 7.5	4.0 ~ 7.5	4.0 ~ 9.0	니켈(Ni)의 용출량 (µg/cm ² /week) ⁶⁾	0.5 이하			<p>가정용 섬유제품 (Textile products)</p> <p>1. 적용범위 (생략) 2. 인용표준 KS K 0021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KS K 0050 ~ 소방청고시 (생략) 3. 용어의 정의 3.1 ~ 3.8 (생략) 3.9 “우모”라 함은 조류의 피부를 덮고 있는 상피 구조물로 이불, 의류 등의 충전물로 이용하기 위해 채취된 털을 말한다. 3.10 “재사용 우모”라 함은 제품에 한 번 이상 사용하였던 우모(소비자 사용 후 수거된 제품에서 채취된 우모)를 말한다. 3.11 (현행 3.9와 같음) 3.12 (현행 3.10과 같음) 3.13 (현행 3.11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외의류</td> <td>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울,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우의,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샌들, 아쿠아 슈즈 등을 말하며, 섬유 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사출 성형한 100% 합성수지제 신발1)과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2)은 제외), 벨트류, 멜빵 등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td> </tr> <tr> <td>중의류</td> <td>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헤어밴드, 가발, 귀마개, 토시 등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td> </tr> <tr> <td>내의류</td> <td>(생략)</td> </tr> <tr> <td>침구류</td> <td>(생략)</td> </tr> <tr> <td>기타제품류³⁾</td> <td>(생략)</td> </tr> </tbody> </table> <p>주 1.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을 따른다. 2.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을 따른다. 3.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p> <p>4. 안전요건 4.1 유해물질 안전요건 ----- ----- ----- ----- 다만, 섬유제 신발 중 착용 시 ----- -----</p> <p style="text-align: center;">[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8), 9)}</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유해물질명</th> <th colspan="3">제품 구분</th> </tr> <tr> <th>내의류</th> <th>중의류</th> <th>외의류 및 침구류</th> </tr> </thead> <tbody> <tr> <td>폼알데하이드 (mg/kg)¹⁾</td> <td>75 이하</td> <td>75 이하</td> <td>300 이하</td> </tr> <tr> <td>아릴아민 (mg/kg)²⁾</td> <td colspan="3">각각 30 이하</td> </tr> <tr> <td>유기주석화합물 (mg/kg)³⁾ TBT(tributyltin)</td> <td colspan="3">1.0 이하</td> </tr> <tr> <td>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⁴⁾</td> <td colspan="3">0.1 이하</td> </tr> <tr> <td>방염제⁵⁾</td> <td colspan="3">사용하지 말 것</td> </tr> <tr> <td>알라지성 염료(mg/kg)⁶⁾</td> <td>각각 50 이하</td> <td>-</td> <td>-</td> </tr> <tr> <td>pH¹⁾</td> <td>4.0 ~ 7.5</td> <td>4.0 ~ 7.5</td> <td>4.0 ~ 9.0</td> </tr> <tr> <td>니켈(Ni)의 용출량 (µg/cm²/week)⁷⁾</td> <td colspan="3">0.5 이하</td> </tr> </tbody> </table> <p>주 1. 섬유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 부록 B, KS K 0739에 ----- 3. ~9. (현행 2. ~ 8.과 같음)</p>	구분	종류	외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 커버울,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 우의,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샌들, 아쿠아 슈즈 등을 말하며, 섬유 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사출 성형한 100% 합성수지제 신발1)과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2)은 제외), 벨트류, 멜빵 등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중의류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헤어밴드, 가발, 귀마개, 토시 등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내의류	(생략)	침구류	(생략)	기타제품류 ³⁾	(생략)	유해물질명	제품 구분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 ¹⁾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 ²⁾	각각 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mg/kg) ³⁾ TBT(tributyltin)	1.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⁴⁾	0.1 이하			방염제 ⁵⁾	사용하지 말 것			알라지성 염료(mg/kg) ⁶⁾	각각 50 이하	-	-	pH ¹⁾	4.0 ~ 7.5	4.0 ~ 7.5	4.0 ~ 9.0	니켈(Ni)의 용출량 (µg/cm ² /week) ⁷⁾	0.5 이하		
구분	종류																																																																																																						
외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 커버울,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 우의,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샌들, 아쿠아 슈즈 등을 말하며, 섬유 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사출 성형한 100% 합성수지제 신발1)과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2)은 제외), 벨트류, 멜빵 등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중의류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헤어밴드, 가발, 귀마개 등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내의류	(생략)																																																																																																						
침구류	(생략)																																																																																																						
기타제품류 ³⁾	(생략)																																																																																																						
유해물질명	제품 구분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 ¹⁾	각각 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mg/kg) ²⁾ TBT(tributyltin)	1.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³⁾	0.1 이하																																																																																																						
방염제 ⁴⁾	사용하지 말 것																																																																																																						
알라지성 염료(mg/kg) ⁵⁾	각각 50 이하	-	-																																																																																																				
pH	4.0 ~ 7.5	4.0 ~ 7.5	4.0 ~ 9.0																																																																																																				
니켈(Ni)의 용출량 (µg/cm ² /week) ⁶⁾	0.5 이하																																																																																																						
구분	종류																																																																																																						
외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 커버울,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 우의,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샌들, 아쿠아 슈즈 등을 말하며, 섬유 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사출 성형한 100% 합성수지제 신발1)과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2)은 제외), 벨트류, 멜빵 등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중의류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헤어밴드, 가발, 귀마개, 토시 등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내의류	(생략)																																																																																																						
침구류	(생략)																																																																																																						
기타제품류 ³⁾	(생략)																																																																																																						
유해물질명	제품 구분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 ¹⁾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 ²⁾	각각 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mg/kg) ³⁾ TBT(tributyltin)	1.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⁴⁾	0.1 이하																																																																																																						
방염제 ⁵⁾	사용하지 말 것																																																																																																						
알라지성 염료(mg/kg) ⁶⁾	각각 50 이하	-	-																																																																																																				
pH ¹⁾	4.0 ~ 7.5	4.0 ~ 7.5	4.0 ~ 9.0																																																																																																				
니켈(Ni)의 용출량 (µg/cm ² /week) ⁷⁾	0.5 이하																																																																																																						

현행

개정

- 4.2 (생략)
- 5. 시험 방법
- 5.1 (생략)
- 5.2 아릴아민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
- 5.3 ~ 5.8 (생략)

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6.1 개별 제품

6.1.1 (생략)

[표 3]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섬유제품 구분	품질표시사항
의류	1.~3. (생략)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u>하나를 표시</u> ¹⁾ 5.~7. (생략)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	1. 섬유유 조성 또는 혼용률 - 걸감 - 안감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2.~3. (생략)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u>하나를 표시</u> ¹⁾ 5.~7. (생략)

- 주 1.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치수는 표시 할 것을 권장한다.

6.1.2 -----
(다만, 피부 접촉이 일시적인 타올 및 직접 착용하지 않은 가방, 방석류, 모기장, 덮개, 수의 등은 자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번호를 관리하고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

6.2.1 개별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신발류,-----

6.2.2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7. 세부표시 방법

7.1 섬유유 조성 또는 혼용률

7.1.1 (생략)

7.1.2 조성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실로 된 원단, 그 원단 또는 조성이 다른 2 종류 -----

7.1.3 다운제품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

7.1.3.1 다운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구분은 KS K 2620 의 4. 조성에 따라 솜털(다운)제품,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혼합제품, 깃털(페더)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솜털, 깃털, 기타로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운제품의 동물명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솜털이나 깃털 이외에 기타로 합성섬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우모 및 인조섬유 혼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우모(솜털, 깃털)와 조성섬유를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다.

7.1.3.2 (생략)

7.1.4 (생략)

(1)~(7) (생략)

<신설>

- 4.2(현행과 같음)
- 5. 시험 방법
- 5.1 (현행과 같음)
- 5.2 아릴아민 부록B., KS K 0739에 -----.
- 5.3 ~ 5.8 (현행과 같음)

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6.1 개별 제품

6.1.1 (현행과 같음)

[표 3]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섬유제품 구분	품질표시사항
의류	1.~3. (현행과 같음)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u>하나</u> 또는 <u>수입연월(수입제품에 한함) 표시</u> 5.~7. (현행과 같음)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	1. 섬유유 조성 또는 혼용률 - 걸감 - 안감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2.~3. (현행과 같음)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u>하나</u> 또는 <u>수입연월(수입제품에 한함) 표시</u> 5.~7. (생략)

- 주 1.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치수는 표시 할 것을 권장한다.

6.1.2 -----
다만,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연월을 표시할 수 있다.(다만, 피부 접촉이 일시적인 타올 및 직접 착용하지 않은 가방, 방석류, 모기장, 덮개, 수의 등은 자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번호를 관리하고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

6.2.1 -----신발류¹⁾,-----
주 1. 걸감 재질,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등 신발류 제품의 중요정보는 6.1.1에 명시된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6.2.2 ----- 종류의 제품을 -----(상,하의 경우는 제외)-----

7. 세부표시 방법

7.1 섬유유 조성 또는 혼용률

7.1.1 (현행과 같음)

7.1.2 조성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실로 된 원단, 그 원단 또는 조성이 다른 2 종류 -----

7.1.3 우모제품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

7.1.3.1 우모제품은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¹⁾가 KS K 2620 5항의 솜털(다운) 제품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솜털(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조성 혼용률은 솜털, 깃털, 조성섬유로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가 2종류 이상 이거나, 사용 부위별 충전재의 함량이 상이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재사용 우모가 사용된 경우, 조성 혼용률은 원모와 동일하게 구분하며, “재사용 우모가 사용되었음”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조류(거위, 오리 등)에서 채취한 우모가 사용된 경우, 동물명을 병기 할 수 있다. 다만, 수조류 이외의 우모를 사용하거나 우모 충전재가 제품 구분에 따른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우모로 분류하고 함량을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다.

주 1. 우모제품에 사용된 충전재라 함은 보온 목적을 위하여 의복 등에 채워진 우모 또는 합성섬유를 통칭하며, 보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심지 및 다운백 등은 제외한다.

7.1.3.2(현행과 같음)

7.1.4(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보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우모 충전재가 사용된 제품은 7.1.3.1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현행

7.1.5~7.1.8 (생략)
 7.2 (생략)
 7.3 취급상 주의사항
 7.3.1 취급상 주의사항은 [\[표 10\]에 따라](#)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KS K 0021에](#) 따라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류, 모기장, 덮개류, 가방류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표 10\] 취급상 주의표시](#)
 (생략)
 7.3.2 금속 악세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표 11\]\(1\)에](#) 따라 녹 및 피부 접촉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3.3 불꽃 주의 표시 불꽃 접근시 제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표 11\]\(2\)에](#) 따라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7.4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경우는 [\[표 12\]에 따른다](#).

[\[표 12\] 치수 표시](#)

품명	치수표시명세	제품치수 허용범위
생략	생략	생략
기저귀의 치수	KS K 0052에 따름	—
생략	생략	생략

주 1. -----
 2. -----
 3. -----
 4. 치수의 범위 표시가 가능한 제품 중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를 범위 표기법에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여 표기 할 수 있다.

7.5 안전요건 적합 표시 (생략)

부록 A. 세부 표시방법(예시)

- A.1 서론 (생략)
- A.2 세부표시방법(예시)
 - A.2.1 혼용률 표시방법(예시) (생략)
 - A.2.2 조성섬유 표시방법(예시) (생략)
 - A.2.3 다운제품 표시방법(예시)

솜털(다운) 제품(거위)		깃털(페더) 제품(오리)	
겉감	나일론 100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솜털 80 % 깃털 20 %	충전재	솜털 80 % 깃털 20 %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혼합제품(오리)		우모 및 인조섬유 혼합제품	
겉감	나일론 100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5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솜털 50 % 깃털 50 %	충전재	우모 75% (솜털 80 %, 깃털 20 %) 폴리에스터 25 %

주 [다운](#)제품에 사용된 우모의 충전량은 KS K 2620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충전량(충전률 무게)은 [다운](#)제품에 사용된 우모의 총 무게(g)를 표시한다.(허용 오차는 -5%)

A.2.4~A.2.7 (생략)

[<신 설>](#)

개정

7.1.5~7.1.8(생략)
 7.2(생략)
 7.2(현행과 같음)
 7.3 취급상 주의사항
 7.3.1 ----- [\[표 10\]에 따라](#) -----
[KS K 0021 중 4.2 번호, 기호 및 기호의 정의 및 6. 표시 방법](#) -----

[<삭 제>](#)
 7.3.2 ----- [\[표 10\]\(1\)에](#) -----

 7.3.3 ----- [\[표 10\]\(2\)에](#) -----

 7.4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경우는 [\[표 11\]의 종류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cm 또는 mm와 같은 미터법 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표 11\] 치수 표시](#)

품명	치수표시명세	제품치수 허용범위
생략	생략	생략
기저귀의 치수	KS K 0052에 따름	—
생략	생략	생략

주 <삭 제>
[<삭 제>](#)
 1. (현행 주 3.과 같음)
 2. 치수의 범위 표시가 가능한 제품 중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를 범위 표기법에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여 표기 할 수 있으며, 치수 범위를 병기할 수 있다.

7.5 안전요건 적합 표시 (생략)

부록 A. 세부 표시방법(예시)

- A.1 서론 (현행과 같음)
- A.2 세부표시방법(예시)
 - A.2.1 혼용률 표시방법(예시) (현행과 같음)
 - A.2.2 조성섬유 표시방법(예시) (현행과 같음)
 - A.2.3 우모제품 표시방법(예시)

제품 예시		표시 방법	
겉감	나일론 100 %	솜털(다운) 제품(거위)	
안감	폴리에스터 100 %	겉감	나일론 100 %
충전재	거위 솜털 80 %, 거위 깃털 2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솜털 80 %, 깃털 20 %
겉감	나일론 100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오리 솜털 50 %, 오리 깃털 50 %	충전재	솜털 50 %, 깃털 50 %
겉감	나일론 100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몸판	재사용 솜털 80 %, 재사용 깃털 20 %	충전재(몸판)	솜털 80 %, 깃털 20 % (재사용 우모가 사용되었음)
등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등판)	폴리에스터 100 %
겉감	나일론 100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오리 솜털 70 %, 육조털 30 %	충전재	지정의우모 100 %

주 [우모](#)제품에 사용된 우모의 충전량은 KS K 2620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충전량(충전률 무게)은 [우모](#)제품에 사용된 우모의 총 무게(g)를 표시한다.(허용 오차는 -5%)

A.2.4~A.2.7 (현행과 같음)

부록 B.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생략)